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65
----------	-------

발의연월일 : 2026. 3. 30.

발 의 자 : 안호영 · 이성윤 · 김주영
윤준병 · 이용우 · 박 정
전진숙 · 장철민 · 박희승
조계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를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봉기한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또한 독립유공자로 예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제2호 및 제

6조 제2항 · 제3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

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한 혁명에 참여하여 순국한 자

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

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한 혁명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자

제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의 독립유공자 유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요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4조(적용 대상자) ----- ----- ----- -----.
1. 순국선열: <u>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u> 자로서, 그 공로로 <u>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u>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1.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u><신 설></u>	가. <u>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u>
<u><신 설></u>	나. 「 <u>동학농민혁명 참여자</u>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
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
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
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
통령 표창을 받은 자

<신 설>

<신 설>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
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
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한 혁명
에 참여하여 순국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
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
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
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

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
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한 혁명
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자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illegible]

<u><신 설></u> <u>③ · ④</u> (생 략)	<u>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④ · 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